

[사 건 명] 행심 2018 - 38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7. 0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8. 06. 15. 4교시 이후 피해학생(□□□)이 지나가다 ▨▨▨ 학생의 신발주머니를 차게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같은 날 점심시간에 ▨▨▨은 피해학생이 자신에게 욕 한 것에 대해 ‘너 그렇게 하면 부모님 욕먹게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니네들도 그렇게 하면 부모님 욕먹게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말하자, ▨▨▨ 학생 옆에 있던 청구인이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니네들’ 이라는 말은 청구인 자신도 포함하여 하는 말이라며 ‘왜 나까지 싸잡아서 부모님 욕을 하나.’ 며 화를 내고, 피해학생의 어깨 및 발을 치며 싸우게 되었고, 이 일로 담임교사와 대화 중 청구인과 ▨▨▨은 피해학생에게 삿대질하며 ‘너 그렇게 살지 마’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2018. 06. 19. 청구인은 흡연예방교육 골든벨에서 가위바위보에 이겨 본선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본 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졌는데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오갔고, 이러한 대화를 들은 같은 반 장□□ 학생이 이를 피해학생에 발언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화가 나서 피해학생을 밀치고 따졌으며, 담임교사가 청구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청구인은 지난 2018. 06. 15.에 발생한 일을 거론하며 피해학생에게 화를 내며 팔을 때렸고,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왜 때리냐고 말하자 청구인은 ‘패드리퍼’ 라고 말하며 뒤에서 □□□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고, 같은 날 6교시 후 담임교사와 대화 도중 청구인과 ■■■■은 피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샷대질하고 욕박질렀고, 피해학생이 ‘이렇게 할 것이면 집에 가겠다’ 고 하자, 청구인과 ■■■■이 가지 말라며 피해학생의 가방을 가져가고, 의자를 발로 차고 □□□의 팔 등을 때렸으며, 이 외에도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몸에 테이프를 붙이고 ‘돼지□끼, 장애인’ 등의 말을 하고, 이마나 팔 등을 때렸다.

다. 한편 담임교사는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도 청구인과 ■■■■, 피해학생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지도 및 교육 차원에서 청구인과 ■■■■ 학생의 사과와 반성 있어 이를 믿고 지켜봐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 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이 없어지지 않고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사안으로 신고하여 학교에서 관련자 및 목격자에 대한 진술 확보 후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 결과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에 회부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학교에서는 관련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학폭위 개최 사실을 통보하면서 참석할 것을 서면으로 안내하였으며, 이후 2017. 7. 3. 개최된 학폭위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사

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10시간, 학급교체,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10시간』 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7. 9. 위 학폭위에서 심의 및 의결한 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2018. 06. 26. 미국으로 ○○트립을 떠났는데 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근거로 내린 조치는 객관적이지 못한 처분이다.
- 나. 학교에서는 학기 초부터 대립이 있었다고 하는데 청구인의 보호자는 담임교사로부터 한 번도 이런 내용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고,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책임이라는 식의 학교측 무책임한 본 조치는 부당하다.
- 다.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가정에 알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이며, 이번 일로 가정에서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모교육도 받아야 되는 처분으로 인해 가정의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보호자가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본인 역시 진술서를 통하여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 나. 피청구인은 본 사안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조사된 사실관계를 통하여 자치위원회 당시 위원들은 관련 학생들 및 보호자에게 조사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하였으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다. 청구인과 ████████, 피해학생과의 관계에서는 갈등 후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학생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담임교사는 꾸준히 신뢰해 왔던 것이다.
-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는 무려 5시간 30분에 걸쳐 신중하게 사안을 조사·검토하였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질의·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이다.
- 마.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합계 14점에 해당하는 제7호 학급교체가 결정되었고, 선도가능성을 협의한 결과 경감사유가 없었으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은 인천시 강화군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으며, 4학년 때는 동급생들과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5학년에 진학하면서 청구인 및 ○○○ 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학기 초부터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과 ○○○ 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리고 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담임교사가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 및 ○○○ 학생과 피해학생과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과 ○○○ 학생이 위 I. 가 및 나 항에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위와 같은 청구인 및 ○○○ 학생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학교폭력사안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학교에서는 관련당사자 및 목격 학생의 진술 확보와 이를 토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협의 결과 학폭위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결정을 하여 학폭위를 개최하기로 하여 학폭위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한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 학생이 학폭위 개최 전에 미국으로 ○○트립을 떠나게 되어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당사자가 참석하지도 않은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미 피청구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폭위 개최 전에 서면을 통해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폭위 개최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측에서는 ○○트립을 가지 않는 청구인의 부친이 학폭위에 참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확보된 청구인 본인 진술 내용과 피해학생의 진술 및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학폭위에 참석한 자들의 진술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학폭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및 결의를 통해 내린 처분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이 외에도 청구인은 학교측과 소통의 부존재, 학교측의 직무유기, 가정의 이미지 실추 등의 내용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 건에서의 심리 및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어서 위법 ·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건 피해학생은 여학생이며, 가해학생인 청구인 및 ☐☐☐ 학생은 남학생들로서 2명의 남학생이 1명의 피해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학생은 5학년에 진학하여 학기 초부터 청구인 및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왔던 점, 담임교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담임교사의 말이나 제재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행동하고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점, 현재 피해학생은 가

해학생인 청구인 및 █████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를 원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 가해학생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 ·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